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

제3자 행동강령

(Third Party Code of Conduct

For SeAH Holdings and its Affiliates)

본 제3자 행동강령은 윤리적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 받으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며 고객과 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이하 "세아")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 제3자 행동강령(이하 "본 행동강령")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아는 당사의 임직원과 공급자(하위 공급망 포함), 계약 상대방, 사업 파트너 등 세아와 거래하는 다양한 제3자 파트너들과 함께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만약 현지 법규와 내용이 상충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1. 노동 인권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자발적 취업

- 제3자 파트너 내 모든 근로자의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숙박 포함) 등에 따른 강제 근로자, 노예,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제3자 파트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채용 또는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1.2 아동근로 금지

- 제3자 파트너의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구성원 중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 제3자 파트너는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비상 또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 근무 시간' 협의로 다른 날에 대체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제3 파트너 구성원들의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임금에 최저임금, 초과 근로 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초과 근무에 대해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쉽게 급여 명세서에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 학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욕설, 체벌,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 제3자 파트너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채용과정과 임금, 보상, 승진, 교육 기회 등 고용 활동에서 인종, 나이, 피부색, 성별, 민족성,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조합원 신분,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7 결사의 자유

- 제3자 파트너의 근로자는 현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제3자 파트너는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괴롭힘, 차별, 보복 및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 및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

제3자 파트너는 회사 업무상 이행되는 모든 활동 범위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 제3자 파트너는 안전 및 보건 위험(예: 화학물질, 전기, 화재, 차량 및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 작업 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및 규정 구축을 통해 파악, 평가 및 통제가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 요소 관련 교육 자료와 작업 시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임신 또는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험 작업 환경에서 제외시키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 제3자 파트너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탈출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된 비상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후 이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추적 및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보고를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 사례를 분류하고 기록하며 의학적 치료 제공,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시정조치 이행하여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산업위생

- 제3자 파트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 고온, 방사선 등의 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와 법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관련 교육 자료와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2.5 신체부담 업무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장시간 서있는 작업, 체력 소모가 많은 업무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 제3자 파트너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안전 장치 및 방호벽 등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2.7 위생, 식품 및 주거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를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식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냉난방 시설, 비상구, 개인 사물함, 합리적인 수준의 적절한 개인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에게 모든 작업장 위험(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안전보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제3자 파트너는 환경보호 법규 및 규정 준수하에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재사용 및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 등 제조공정에서

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공의 안전보건을 지켜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취득

- 제3자 파트너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예: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및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절감

- 제3자 파트너는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시 오염원 제거 설비 추가, 공정 개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 산물 등의 천연자원을 생산 프로세스 개선,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사용, 자재 재활용, 재사용, 보존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보존하여야 합니다.

3.3 유해물질

- 제3자 파트너는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모든 화학물질이 안전한 취급과 운반,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안전한 폐기를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3.4 폐기물 관리

- 제3자 파트너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저감하며, 적법하게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5 대기오염물질 관리

- 제3자 파트너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파괴물질과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하며, 오염물질을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3.6 물질 규제 준수

- 제3자 파트너는 물질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특정 물질 사용 금지 및 제한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7 수자원 관리

- 제3자 파트너는 수자원 사용과 방출 기록을 감시하고, 보존 방법을 모색하여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 법규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폐수 처리 시스템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제3자 파트너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감축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3.9 동물 복지

- 제3자 파트너는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실험을 수행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 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4. 윤리 및 공정거래

제3자 파트너는 사회적 책임 및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1 청렴성

-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모든 뇌물수수, 부당이득,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4.2 부당 이익 금지

- 제3자 파트너는 뇌물이나 부적절한 이익을 대가로 약속, 제안, 제공, 허가 또는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 여기에는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획득 또는 부여하거나,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3 정보공개

- 제3자 파트너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성사되어야 하며,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사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4.4 지식재산 보호

- 제3자 파트너의 지식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식재산권

의 보호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세아 및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기술, 정보 및 지식재산 등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타인의 특허,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4.5 개인정보 보호

- 제3자 파트너는 사업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6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제3자 파트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내외 반독점,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의 모든 마케팅 및 광고는 윤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법률, 지침 및 업계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4.7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

- 제3자 파트너는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고발자의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4.8 책임있는 자재 관리

- 제3자 파트너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되는 광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인권과 환경적으로 우려가 예상되는 분쟁광물(콩고 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생산되는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4.9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제3자 파트너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각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및 개인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4.10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

-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규와 테러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11 이해 상충

- 제3자 파트너는 업무상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세아를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법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 본 행동강령 준수,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5.1 준수 의지 표명

- 제3자 파트너는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현지 언어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5.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제3자 파트너는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5.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4 리스크 관리

- 제3자 파트너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안전보건, 준법, 인권, 노동 관행 및 윤리적 위험성 파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3자 파트너는 각 위험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기술적 또는 행정적으로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5 개선 목표

- 제3자 파트너는 사회, 환경 및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6 교육

-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 절차 및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5.7 커뮤니케이션

- 제3자 파트너는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에게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8 구성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에서 조건에 대해 구성원이 익명 또는 기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접수된 피드백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9 감사 및 평가

- 제3자 파트너는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행동강령의 내용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5.10 시정조치 프로세스

- 제3자 파트너는 내부 및 외부 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11 문서 및 기록

- 제3자 파트너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회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부록]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 제3자 행동강령 협조 및 동참 약속서

당사는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이하 "세아")의 제3자 파트너로서, 세아홀딩스 및 세아홀딩스 산하계열사 제3자 행동강령(이하 "본 행동강령")의 도입 취지 및 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습니다. 당사도 본 행동강령의 취지에 따라 이를 준수하며, 당사의 공급망에게도 본 행동강령의 요건을 전달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행동강령에 공감하며, 적절한 내부 행동강령을 적용하여 행동강령 원칙과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세아가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사에서 발생한 본 행동강령과 어긋난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점검이 실시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YYYY년 MM월 DD일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인)